

건설 및 공간 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각종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구조변경, 실 배치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기획, 설계, 조정 및 심의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건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및 용도에 필요한 사항
2.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
3. 실 배치에 관한 사항
4. 토목, 조경시설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비서실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본대학 교직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및 건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11.11.1, 2015. 5. 1, 2018. 2. 23, 2019. 8. 1., 2020. 9. 8., 2021. 3. 1.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팀장이 한다.(개정 2020. 9. 8.)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회의록 작성 및 보고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2. 23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사무처’를 ‘사무처’와 ‘재무처’로 분리한다.

부 칙(2019. 8. 1.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사무처’와 ‘재무처’를 ‘총무처’로 통합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